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제정 이유

-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법률 적용대상

① 적용 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② 적용 대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 공직자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국민(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① 부정청탁의 개념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 규정(7개)

② 부정청탁의 금지 직무 유형

-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업무
-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직무
-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 직무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특정한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한 직무
-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 직무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등 조작, 위법사항 직무
- 사건의 수사·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위의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③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

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운영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행위를 요구
-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신청·요구·결과 등 확인하는 행위
-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요구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시 과태료 부과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②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5 징계 및 벌칙

- ① 공직자의 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형벌·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유형	위 반 행 위	제재 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없음
	·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6 기타 참고 사항

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②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 수수 범위

유 형	대 상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령
①음식물	전체 적용 대상	3만원	3만원
②선 물		수수금지	5만원
③경조사비		5만원	10만원

※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상한액을 넘지 못한다(예시: ①+②=50,000원/①+②+③=100,000원)

③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범위

(단위:만원/1시간)

유 형	대 상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령
강연료	공무원	장관급이상	40	50
		차관급이상	30	40
		4급이상	23	30
		5급이하	12	20
	공직유관 기관	기관장	공무원의 비슷한 직급에 준하여 결정	40
		임원		30
		직원		20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규정 없음	100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함(예시: 장관급 2시간 강의= 50+25=75)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 기고(寄稿)의 경우 1건당 100만원이 상한